|  |  |  |
| --- | --- | --- |
| **국가세무총국의<중대세수위법안건정보 공포방법(시범시행)>수정에 관한 공고**  국가세무총국공고2016년제24호  <국세 및 지세 징수관리체계개혁 심화방안>을 관철하여 실행에 옮기고, 세무와 관련된 엄중한 위법행위를 한층 더 징계하며, 납세자가 법에 의거 납세의식과 세법의 준법수준을 향상시켜, 사회신용체계 건설을 추진하기 위해, 국가세무총국이 <중대세수위법안건정보 공포방법(시범시행>를 수정하여 이에 공포하며,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특별히 이에 공고한다.  국가세무총국  2016년4월16일  **중대세수위법안건정보 공포방법**  **(시범시행)**  **제1장 총칙**  **제1조** 정상적인 세수징수관리질서를 유지하고, 세무와 관련된 엄중한 위법행위를 징계하며, 사회신용체계 건설을 추진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세수징수관리법>과 <국무원의 사회신용체계 건설계획요강(2014-2020년) 배포에 관한 통지>(국발[2014]21호)에 근거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세무기관은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공개적으로 중대세수위법안건정보를 공포하고, 또한 정보를 관련부문에 통보하여 공동으로 엄격한 감독관리와 연합징계를 실시한다.  **제3조** 중대세수위법안건정보를 공포하고 당사자에 대한 징계를 실시할 경우에는 법에 의거 행정, 공평공정 및 통일규범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 검사 및 책임의 귀속원칙에 따라 공포한 안건에 대해 검사를 실시한 세무기관은 공포한 안건정보의 합법성, 진실성 및 정확성에 대해 책임진다.  **제5조** 세무기관은 중대세수위법안건 공포정보시스템과 국가신용정보 공유교환플랫폼 등 경로를 통해, 대외적으로 중대세수위법안건정보를 공포하고, 관련부문은 이러한 정보를 근거로 당사자에 대한 연합징계 및 관리조치를 실시한다.  **제2장 표준안건**  **제6조** 본 방법에서 말하는 “중대세수위법안건”은 아래표준에 부합되는 안건을 가리킨다.  1. 납세자가 위조, 변조, 은닉, 장부 및 기장증빙 임의소각 또는 장부상 지출을 과다하게 적거나 또는 수입을 누락 및 축소한 경우, 또는 세무기관을 거쳐 신고를 통지하였으나 신고를 거부하였거나 허위로 납세신고를 한 경우, 납부세금을 내지 않았거나 적게 낸 경우, 조사를 통한 추가세액이 100만 위안 이상인 경우, 또한 임의 1년도의 조사를 통한 추가세액이 당해 년도 각종 납부세액 총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2. 납세자가 납부세금을 체납하고 재산을 옮기거나 또는 은닉할 수단을 취하여 세무기관이 체납세금을 추징하는 것을 방해하고 체납세액이 100만 위안 이상인 경우  3. 허위수출보고 또는 기타 기만적 수단으로 국가수출 환급(퇴)세액을 편취한 경우  4. 폭력 및 위협적 방법을 동원해 세금납부를 거부한 경우  5. 증치세 전용세금산서를 허위 발행하거나 또는 수출환급(퇴)세 및 공제세액을 편취하기 위한 용도로 기타 세금계산서를 허위 발행한 경우  6. 일반세금계산서 100부 또는 금액 40만 위안 이상을 허위 발행한 경우  7. 세금계산서를 사적으로 인쇄제작, 위조 및 변조, 또는 세금계산서 위조방지 전용물품을 불법적으로 제조하거나, 세금계산서 감독제작인장을 위조한 경우  8. 상술한 표준에는 도달하지 않았으나 위법경위가 엄중하고 비교적 큰 사회적 영향이 있을 경우  전 관에 규정된 중대세수위법안건에 부합하고, 세무감사국이 <세무처리결정서> 또는 <세무행정처벌결정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법정기간 내 행정심의를 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거나 또는 행정심의나 법원판결을 거쳐 해당 안건에 대해 최종적으로 효력이 확정된 후, 본 방법에 따라 처리한다.  **제3장 정보공포**  **제7조** 중대세수위법안건정보를 공포할 경우, 이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법인 또는 기타조직의 경우: 명칭, 통일사회신용대마 또는 납세자 식별번호, 등록주소지, 법정대표인, 책임자 또는 법원판결을 거쳐 확정된 실제책임자의 성명, 성별 및 신분증번호(출생연월일 숨김 처리, 이하 동일), 법원판결을 거쳐 확정된 직접적 책임이 있는 재무직원의 성명, 성별 및 신분증번호 공포  2. 자연인(일반인)의 경우: 성명, 성별, 신분증번호 공포  3. 주요 위법사실  4. 관련 적용법률  5. 세무처리 및 세무행정처벌상황  6. 검사를 실시하는 단위  7. 공포한 중대세수위법안건과 직접적 책임이 있는 세무와 관련된 전문서비스기구 및 종업원에 대해 세무기관은 법에 의거 그 명칭, 통일사회신용대마 또는 납세자 식별번호, 등록주소지 및 직접책임자의 성명, 성별, 신분증번호 및 직업자격증서 일련번호를 전부 공포할 수 있다.  전 관 제1항 중 법인 또는 기타조직의 법정대표인, 책임자 및 위법사건발생 시의 법정대표인, 책임자가 불일치할 경우에는 전부 공포하며, 또한 위법사실발생 시의 법정대표인, 책임자에 대해서는 주석을 달아 표시하여야 한다.  **제8조** 성 이하 세무기관은 즉시 표준공포에 부합되는 안건정보를 중대세수위법안건 공포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성 세무기관 포털 사이트를 통해 대중에게 공포하고 동시에 본 지역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본급 세무기관 공고란, 신문, 광고, TV 및 인터넷 매체 등 경로 및 기자회견 등 형식을 통해 대중에게 공포할 수 있다.  국가세무총국 포털 사이트에 전용란을 만들어 성 세무기관 포털 사이트의 공포내용을 링크시킨다.  **제9조** 본 방법 제6조 제1관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중대세수위법안건에 부합하는 당사자가 <세무처리결정서>, <세무행정처벌결정서>에 따라 세금, 체납금 및 범칙금을 완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검사를 실시한 세무기관의 결정을 거쳐 안건정보를 중대세수위법안건 공포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대중에게 해당 안건정보를 공포하지는 않는다.  안건정보를 이미 대중에게 공포한 후, 당사자가 전 관 규정에 부합될 경우에는 검사를 실시한 세무기관의 결정을 거쳐 공포를 중단하고 공고란에서 삭제하며, 또한 세금, 체납금 및 범칙금을 납부한 상황을 연합징계 및 관리를 실시하는 부문에 통지한다.  **제10조** 중대세수위법안건정보는 공포일로부터 만 2년째인 경우에는 공포를 중지하고 또한 공고란에서 삭제한다.  **제11조** 안건정보는 중대세수위법안건 공포정보시스템을 통해 입력하고, 납세자로서의 납세신용기록은 영구 보존된다.  **제4장 징계조치**  **제12조** 본 방법에 따라 공포한 당사자에 대해 법에 의거 다음의 조치를 취한다.  1. 납세신용등급 D급으로 바로 판정된 경우에는 상응되는 D급 납세자 관리조치를 적용한다.  2. 조사를 통한 추가세액을 체납한 납세자 또는 그 법정대표인이 출경(출국) 전 규정에 따라 납부세액, 체납금을 완납하지 않았거나 또는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해서는 세무기관은 <중화인민공화국 세수징수관리법>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출입경관리기관에 통지하여 그 출경(출국)을 저지할 수 있다.  3. 세무기관은 당사자 정보를 연합징계에 참여 및 실시하는 관련부문에 제공하고, 관련부문은 법에 의거 당사자에 대한 연합징계와 관리조치를 취한다.  본 방법 제9조에 규정된 당사자는 전 관 제1항 규정을 적용한다.  **제13조** 국가세무총국과 성 세무기관은 약정방식을 통하여 연합징계에 참여한 동급부문에게 세무기관이 대외 공포한 본 관할지역 중대세수위법안건정보를 제공한다.  시 이하 세무기관이 연합징계에 참여한 동급부문에게 대외 공포한 본 관할지역 중대세수위법안건정보를 제공하는 여부는 시 이하 세무기관이 실제상황에 근거하여, 관련부문과 협상하여 결정한다.  **제14조** 중대세수위법안건정보는 동태관리를 실행하고, 안건정보가 변경될 경우에는 본 방법 제 13조 규정에 따라 안건정보를 제공하는 세무기관이 즉시 연합징계에 참여 및 관리하는 동급부문에 갱신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5장 부칙**  **제15조** 공포된 당사자가 공고내용에 대해 의의를 제기할 경우에는 검사를 실시한 세무기관이 재심사 및 처리를 책임진다.  **제16조** 본 방법에서 말하는 세무기관은 국가세무총국과 성 이하 국가세무국 및 지방세무국을 가리킨다.  **제17조** 본 방법에서 말하는 “이상”은 본 수를 포함하고, “이하”는 본 급을 포함한다.  **제18조** 본 방법은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하며, <국가세무총국의 <중대세수위법안건정보 공포방법(시범시행)>발표에 관한 공고>(국가세무총국공고2014년제41호)는 동시에 폐지한다. |  | **国家税务总局关于修订《重大税收违法案件信息公布办法（试行）》的公告**  国家税务总局公告2016年第24号  　　为贯彻落实《深化国税、地税征管体制改革方案》，进一步惩戒严重涉税违法行为，提高纳税人依法纳税意识和税法遵从度，推进社会信用体系建设，国家税务总局修订了《重大税收违法案件信息公布办法（试行）》，现予以公布，自2016年6月1日起施行。    特此公告。  国家税务总局  2016年4月16日  **重大税收违法案件信息公布办法**  **（试行）**  **第一章 总 则**  **第一条** 为维护正常的税收征收管理秩序，惩戒严重涉税违法行为，推进社会信用体系建设，根据《中华人民共和国税收征收管理法》和《国务院关于印发社会信用体系建设规划纲要（2014-2020年）的通知》（国发〔2014〕21号），制定本办法。  **第二条** 税务机关依照本办法的规定，向社会公布重大税收违法案件信息，并将信息通报相关部门，共同实施严格监管和联合惩戒。  **第三条** 公布重大税收违法案件信息和对当事人实施惩戒，应当遵循依法行政、公平公正、统一规范的原则。  **第四条** 按照谁检查、谁负责的原则，对公布的案件实施检查的税务机关对公布案件信息的合法性、真实性和准确性负责。  **第五条** 税务机关通过建立重大税收违法案件公布信息系统和利用国家信用信息共享交换平台等渠道，对外公布重大税收违法案件信息，并由相关部门根据这些信息对当事人实施联合惩戒和管理措施。  **第二章 案件标准**  **第六条** 本办法所称“重大税收违法案件”是指符合下列标准的案件：  　　（一）纳税人伪造、变造、隐匿、擅自销毁账簿、记账凭证，或者在账簿上多列支出或者不列、少列收入，或者经税务机关通知申报而拒不申报或者进行虚假的纳税申报，不缴或者少缴应纳税款，查补税款金额100万元以上，且任一年度查补税额占当年各税种应纳税总额10%以上；  （二）纳税人欠缴应纳税款，采取转移或者隐匿财产的手段，妨碍税务机关追缴欠缴的税款，欠缴税款金额100万元以上的；  　　（三）以假报出口或者其他欺骗手段，骗取国家出口退税款的；  　　（四）以暴力、威胁方法拒不缴纳税款的；  　　（五）虚开增值税专用发票或者虚开用于骗取出口退税、抵扣税款的其他发票的；  　　（六）虚开普通发票100份或者金额40万元以上的；  （七）私自印制、伪造、变造发票，非法制造发票防伪专用品，伪造发票监制章的；  　　（八）虽未达到上述标准，但违法情节严重、有较大社会影响的。  　　符合前款规定的重大税收违法案件，由税务稽查局作出了《税务处理决定书》或《税务行政处罚决定书》，且当事人在法定期间内没有申请行政复议或者提起行政诉讼，或者经行政复议或法院裁判对此案件最终确定效力后，按本办法处理。  **第三章 信息公布**  **第七条** 公布重大税收违法案件信息，应当包括以下内容：  　　（一）对法人或者其他组织：公布其名称，统一社会信用代码或纳税人识别号，注册地址，法定代表人、负责人或者经法院判决确定的实际责任人的姓名、性别及身份证号码（隐去出生年、月、日号码段，下同），经法院判决确定的负有直接责任的财务人员的姓名、性别及身份证号码；  　　（二）对自然人：公布其姓名、性别、身份证号码；  　　（三）主要违法事实；  　　（四）适用相关法律依据；  　　（五）税务处理、税务行政处罚情况；  　　（六）实施检查的单位；  　　（七）对公布的重大税收违法案件负有直接责任的涉税专业服务机构及从业人员，税务机关可以依法一并公布其名称、统一社会信用代码或纳税人识别号、注册地址，以及直接责任人的姓名、性别、身份证号码、职业资格证书编号。  　　前款第一项中法人或者其他组织的法定代表人、负责人与违法事实发生时的法定代表人、负责人不一致的，应一并公布，并对违法事实发生时的法定代表人、负责人进行标注。  **第八条** 省以下税务机关应及时将符合公布标准的案件信息录入重大税收违法案件公布信息系统，通过省税务机关门户网站向社会公布，同时可以根据本地区实际情况，通过本级税务机关公告栏、报纸、广播、电视、网络媒体等途径以及新闻发布会等形式向社会公布。  　　国家税务总局门户网站设立专栏链接省税务机关门户网站的公布内容。  **第九条** 符合本办法第六条第一款第一项、第二项规定的重大税收违法案件的当事人，能按照《税务处理决定书》《税务行政处罚决定书》缴清税款、滞纳金和罚款的，经实施检查的税务机关决定，只将案件信息录入重大税收违法案件公布信息系统，不向社会公布该案件信息。  案件信息已经向社会公布后，当事人符合前款规定的，经实施检查的税务机关决定，停止公布并从公告栏中撤出，并将缴清税款、滞纳金和罚款的情况通知实施联合惩戒和管理的部门。  **第十条** 重大税收违法案件信息自公布之日起满2年的，停止公布并从公告栏中撤出。  **第十一条** 案件信息一经录入重大税收违法案件公布信息系统，将作为纳税人的纳税信用记录永久保存。  **第四章 惩戒措施**  **第十二条** 对按本办法公布的当事人，依法采取以下措施：  　　（一）纳税信用级别直接判为D级，适用相应的D级纳税人管理措施；  　　（二）对欠缴查补税款的纳税人或者其法定代表人在出境前未按照规定结清应纳税款、滞纳金或者提供纳税担保的，税务机关可以依据《中华人民共和国税收征收管理法》相关规定，通知出入境管理机关阻止其出境；    （三）税务机关将当事人信息提供给参与实施联合惩戒的相关部门，由相关部门依法对当事人采取联合惩戒和管理措施。  　　符合本办法第九条规定的当事人，适用前款第一项规定。  **第十三条** 国家税务总局和省税务机关通过约定方式，向同级参与联合惩戒的部门提供税务机关对外公布的本辖区内重大税收违法案件信息。  　　市以下税务机关是否向同级参与联合惩戒的部门提供对外公布的本辖区内重大税收违法案件信息，由市以下税务机关根据实际情况，与相关部门协商决定。  **第十四条** 重大税收违法案件信息实行动态管理，案件信息发生变化的，按本办法第十三条规定提供案件信息的税务机关应当及时向同级参与联合惩戒和管理的部门提供更新信息。  **第五章 附 则**  **第十五条** 被公布的当事人对公布内容提出异议的，由实施检查的税务机关负责复核和处理。  **第十六条** 本办法所称税务机关，是指国家税务总局和省以下国家税务局、地方税务局。  **第十七条** 本办法所称“以上”包含本数，“以下”包含本级。  **第十八条** 本办法自2016年6月1日起施行。《国家税务总局关于发布〈重大税收违法案件信息公布办法(试行)〉的公告》（国家税务总局公告2014年第41号）同时废止。 |